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6.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설치, 운영,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이용시간, 휴관일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이용 신청·제한, 이용료, 수강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마. 시설의 보호, 손해배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바. 지도·감독, 준용,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여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및 소통·교류 공간 제공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취업·창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휴관일에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 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날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집회에 이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미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센터의 설립 목적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
3. 여성의 권익증진 또는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공익적 비영리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그 밖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해 이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개시일 전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2.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시설의 보호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센터 시설,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시 설 명	기 준	이 용 료	비 고
회의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본 이용시간: 2시간 - 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1시간 미만의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본다)
공유주방	1회 2시간	20,000원	
공유오피스	1개월	20,000원	○ 1일 이용료: 2,000원

가. 냉·난방기, 전기료 등 시설장비 및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교육 및 프로그램	1인 1강좌/월	무료 ~ 15,000원	○ 재료비 및 교재비 등 본인 부담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나. 외부 전문가·강사 초빙, 강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별도의 수강료를 산정할 수 있다.

■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여성커뮤니티센터 이용(변경·취소) 신청서

(앞면)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용시설		이용인원	명
이용일시(기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일)	
이용목적			
변경·취소	내용		
	사유		
비고			
<p>「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의 이용·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구미시장 귀하</p>			

(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이용자	성명 (단체명)		주소
이용(변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p>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미 시 장</p> <p style="text-align: right;">※ 위탁 시에는 센터장으로 명의 변경됨</p>			

서 약 서

이용자 성 명 :

주 소 :

위 본인은 귀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까지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센터 내의 시설물 등을 소중히 아껴 이용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해 청결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2. 센터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공공의 질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이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5.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겠습니다.
6. 이용료 납부 및 반환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24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4.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그 내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공공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공공위탁 또는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 ⑦ 생략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생략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설치 및 운영)
- 안 제13조(위탁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3조에 따른 설치·운영비 및 인건비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재정의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
- 안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금 :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
 - 연 4천만원('26년도 기준), 연 9천만원('27 ~ '28년도 기준)

4. 작성자

-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 이수연(☎480-6538)

소 관 부 서		가족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민 명 숙
	팀 장	백 은 영
	담 당 자	이 수 연 (480-6538)